

2026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제주관광공사 제3차 정규직 채용) 공고

2026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주관광공사 제3차 정규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1.

제주관광공사 사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기관명	구분	직급	채용 예정분야		선발 예정 인원	업무내용
총 선발예정인원					2명	
제 주 관 광 공 사	일 반 정 규 직	일 반 직 6급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일본어)	신 입	1명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업무 등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 주5일(월~금), 주40시간 • 근무지: 제주웰컴센터(제주시 연동) 등
		전 문 직 6급	면세사업 (시설관리)	신 입	1명	• 중문·성산면세점 매장 MD 개편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 공사 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 주5일(스케줄근무), 주40시간 • 근무지: 중문면세점, 성산면세점 등

※ 공사의 직급체계도

직군	직종	하위직급				상위직급	
일반정규직	일반직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전문직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상용정규직	기능직						
	상용직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1) 응시연령: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2) 성 별: 제한없음
- 3) 거주지 요건 (아래의 조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2026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미포함)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 ② 2026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미포함)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③ 공고일 기준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4)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5)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직종	직급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일반 정규직	일반직 6급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일본어)	1명 • 어학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하나 이상의 어학 자격을 충족한 자 - 일본어: JPT 850점, JLPT N1 이상, OPIc(일본어) IM3 이상, SJPT 레벨8 이상
	전문직 6급	면세사업 (시설관리)	1명 • 자격증: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자격증(한국 국가 기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 산업기사: 실내건축,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 기사: 실내건축, 건축, 건축설비

※ 모든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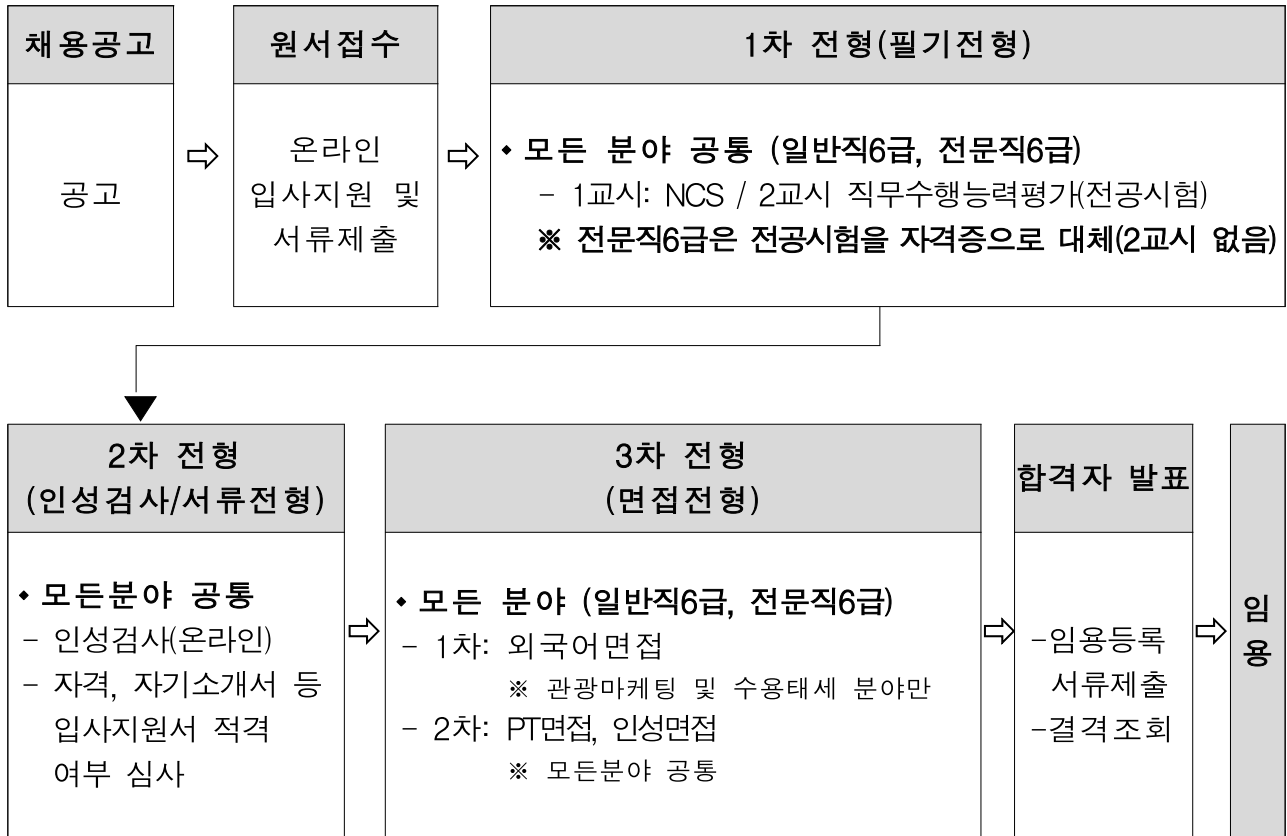
※ 제출서류가 허위,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채용절차 중 또는 최종합격 결정이 된 이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사전등록된 어학자격증에 대해서도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함

※ 「JLPT」는 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함

3. 시험절차 및 평가방법

○ 시험절차



○ 시험절차 별 합격배수

분야		필기전형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외국어면접	PT면접	인성면접
일반직6급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일본어)	5배수	적격자 전원	3배수	1배수	
전문직6급	면세사업 (시설관리)	3배수	적격자 전원	-	1배수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 평가방법

① 필기전형

- 출제 및 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약된 채용 전문 기관 위탁
- 필기문제관련 출제, 인쇄, 보관, 이송, 배부, 채점, 결과보고, 고사장 및 대관 세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실시 (필요시 문제인쇄·포장 등의 절차에 입회 참여)
- 채점은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공사에서 채점결과 확인 후 가점 적용하여 필기시험 합격배수(3배수~5배수) 만큼 합격자 결정
 - 외국어 분야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5배수로 함
- 대 상 자: 일반정규직 지원자(전문직6급 전공 시험은 자격증으로 대체)
-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1과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모든 분야 공통)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 50문항, 60분 / 100점 만점(40점 미만 과락)
2과목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관광학, 경영학 중 택1 - 면세사업(시설관리) 2과목 시험 없음 - 25문항, 30분 / 100점 만점(40점 미만 과락)

- 시험난이도 수준

구분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일본어)	면세사업 (시설관리)
1과목	NCS	대졸	대졸
2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대졸	-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고, 1과목 및 2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 가점을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균 점수 60점 미만은 불합격)

※ 면세사업(시설관리)는 1과목만 적용(60점 미만 불합격, 고득점자 순 선발)

※ 합격자 결정 결과 동점자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절사함

- 합격배수

채용예정분야	합격배수	비고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외국어분야
면세사업(시설관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필기시험 진행 시 휴대폰, 스마트글래스,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통신 장비 사용시 퇴실 조치 후 불합격 처리(기타 세부내용은 통합채용 운영 기준에 따름)

②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

- 대 상 자: 모든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1) 인성검사: 온라인으로 인성검사 시행

· 면접참고 자료 활용(단,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포기자 간주)

2) 서류전형: 적격여부 심사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등 적격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불성실 심사

※ 서류전형 불성실 등 탈락 기준

- 입사지원서에 채용예정분야의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기재 내용이 없거나, 작성항목 중 하나라도 특정문자 또는 글(단어 포함)을 반복해서 기재하여 글자 수를 채웠을 경우
- 작성항목 중 하나라도 불필요한 띄어쓰기 및 단락 나누기 등을 통해 글자 수를 채웠을 경우
- 작성항목 중 하나라도 허용 글자 수의 7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합격배수 : 적격자 전원

· 서류전형 시험위원: 내·외부 위원 2명 이상 선정하여 평가 시행
(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③ 면접전형

- 공통사항

1)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 제공하지 아니함
- 면접위원 대상 사전교육을 통해 연령, 성별, 학력 등 인적사항 및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교육과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전형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2) 응시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 반영

※ 예시: 면접위원별 총 배점이 100점이고 5가지 항목별 배점이 각 20점인 경우

'A'응시자	합계 점수/배점	가위원	나위원	다위원	라위원	마위원
합 계	75.65/100점	14.66점	16.33점	15.66점	13점	16점
가항목	14점/20점	18 최고	16	10 최저	11	15
나항목	15.33점/20점	15	19 최고	17	11 최저	14
다항목	12.33점/20점	12	17 최고	15	10	6 최저
라항목	17.33점/20점	11 최저	15	19 최고	18	19 최고
마항목	16.66점/20점	17	18	15	11 최저	20 최고

- 면접시험위원

- 5명 이상으로 구성, 면접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과반의 외부 전문위원 추천
-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따르며,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의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함

- 면접전형개요

채용예정분야	1차 면접	2차 면접	
	외국어 면접	PT면접	인성면접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	○	○
면세사업(시설 관리)	-	○	○

- 면접전형 세부개요

1) 1차면접(외국어면접)

- 대 상 자: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채용예정분야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구분	채용예정분야	면접내용
일반직6급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일본어 면접

- 면접방식: 1대多 면접 (응시자 1, 면접관 多)
- 평가항목

평가항목	(1) 말하기	(2)듣기·이해력	(3)어휘력	(4)숙련도	합계
배점	25점	25점	25점	25점	100점

- 합격배수: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계 점수 70점 미만은 불합격)
- ※ 합격자 결정 결과 동점자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절사함

2) 2차면접(PT면접 및 인성면접)

- 대 상 자: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외국어면접 합격자 및 그 외 분야 서류전형 통과자
- 면접내용

채용예정분야	PT면접	인성면접	합계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50%	50%	100%
면세사업(시설관리)	50%	50%	100%

- ※ PT면접: 당일 주제가 고지되며, 당일 현장에서 발표 준비 후 면접 진행, PPT 작성하는 면접이 아니며, 주제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면접
- ※ 인성면접: 지원자의 인성 및 역량 등을 평가하는 면접

- 면접방식: 1 대 多 면접 (응시자 1, 면접관 多)
- 평가항목

(1) PT면접

평가항목	(1) 직무적사고	(2) 발표력	(3) 논리적사고	(4) 창의성	(5) 의사소통 및 판단력	합계
배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2) 인성면접

평가항목	(1)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	(2) 전문 지식, 업무 이해도 및 글로벌 경쟁력	(3) 창의·혁신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	(4) 개방 및 협력 정신	(5) 도전 정신과 책임의식	(6) 예의, 품의 등 태도	합계
배점	30점	20점	15점	15점	10점	10점	100점

- 합격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합계 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계 점수 70점 미만은 불합격)
- 동점자 처리방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인성면접 고득점자 → PT면접 고득점자 → 인성면접 외부위원 고득점자 → PT면접 외부위원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1)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2)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3)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4)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5) 고득점자 → 인성면접 평가항목 (6) 고득점자
-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절사함
- ※ 동점자의 처리 시에도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반영

4. 가점

구분	대상자 기준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 증등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필기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필기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5%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
-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은 과락 결정 이후에 적용함
- 가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관련서류 미제출, 등록번호 오기재 등에 의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 등에서 허위 내용이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결정방법

- 예비합격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로 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로 추가 임용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순서는 면접전형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6. 원서접수 (온라인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jeju.career.co.kr)
- 접수기간: 2026.09.14.(월) ~ 2026.09.22.(화) 18:00까지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시 등록)

채용 예정분야	제출 서류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 이력 포함) 또는 졸업증명서	(3) 자격요건 증빙	(4) 가점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일본어)		필수	필수	필수 (어학자격)	해당 시 제출
면세사업 (시설관리)		필수	필수	필수 (자격증)	

- ※ 모든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
- ※ 어학자격은 자격증 사본 또는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사전등록된 어학 성적 관련 서류 제출
- ※ 「JLPT」는 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함
- ※ 면세사업(시설관리)은 자격증 사본과 온라인상 등록된 관련 서류 제출(온라인상 등록된 서류가 없을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자격증 사본 제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표시하지 않고) 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제주관광공사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복수·중복 지원 불가함
- 또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타 공공기관으로의 입사지원서 중복 지원도 불가함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064-740-6022)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제출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공고일 및 이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7. 근무조건

○ 보수수준

구분	채용예정분야		기본연봉수준	비고
일반직6급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일본어)	신입	27,800,000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성과급, 수당 등 별도 지급
전문직6급	면세점 시설관리	신입	27,200,000	

- 성과급은 별도 지급하며, 기관의 평가 및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지급함
- 복리후생 등: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적용
- 계약기간: 정년(만 60세) 까지
- 신입 입사의 경우 수습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급여 수준이 적용됨
- ※ 병역의무에 따른 군경력은 인정함(수습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8. 시험일정(안)

일 시	추진내용	비 고
9. 1.(화)	제3회 통합채용 시험 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까지
9. 14.(월)~9. 22.(화)	원서 접수(가산.필수자격증 등 포함)	7일(공휴일 제외)
10. 8.(목)	필기시험 장소 공고	
10. 17.(토)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10. 27.(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 27.(화)~10. 29.(목)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접수 및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10. 27.(화)~11. 2.(월)	온라인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11. 4.(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 4.(수)~11. 6.(금)	서류전형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11. 12.(목)~11. 13.(금)	1차 면접시험(외국어면접)	
11. 18.(수)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1. 18.(수)~11. 20.(금)	면접시험 이의신청 접수	
11. 25.(수)~11. 27.(금)	2차 면접시험(직무, 인성)	
12. 2.(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2. 2.(수)~12. 4.(금)	면접시험 이의신청 접수	
12. 2.(수)~12. 9.(수)	합격자 임용서류 접수	
12. 9.(수)~12. 16.(수)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회	
12. 22.(화)	임용(예정)일	

※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일정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학교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사지원서 기재 오류 및 허위 기재 책임)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 미비자,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다. (임용관련 안내)

- 근무지는 제주도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가 불가능 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됨
- 전형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마다 안내함

마. (공고문 변경 시 안내)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며, 자세한 변경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에 게시함

바. (중복지원 제한)

- 응시자는 모집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 2026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타 공공기관에 중복지원 불가

사. (서류반환 청구)

- 불합격자의 경우, 응시자의 반환청구 시 반환 시행
-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세부적인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름

제주관광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